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
-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6)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7)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군·자치구”를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본다.

제7조의3(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시
유관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4(중전의 제7조의2)의 제목 “(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을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의4(중전의 제7조의2)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4(중전의 제7조의2) 제2항(중전의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 및 관리”를 “발급 및 사용 관리”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장에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정보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정보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정보
 6. 제14조제5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제77조의3제3항 중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수급자격 확인 조사를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월평균 보수) 및 실업급여에 관한 자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8.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등 소득·재산자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휴업, 폐업 정보, 상가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9.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1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전월세거래 정보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1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1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6.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 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 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u>시</u> <u>· 군 · 자치구의 장</u> 및 교육장으 로 구성한다.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 ----- ----- ----- 특 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 자치구-----.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u> <u>시협의회)</u>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u>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u> <u>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u> <u>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u> <u>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u> <u>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본다.</u>
<u><신 설></u>	<u>제7조의3(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u> <u>의체)</u>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u>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u> <u>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u> <u>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u> <u>으로 둔다.</u>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신 설>	② <u>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1. <u>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u> 2. 「<u>장애인복지법</u>」 제29조의2에 따른 <u>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u> <u>유관기관의 장</u> ③ <u>교육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u>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u>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u>
---	--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가구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삭제>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
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
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
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신 설>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
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신
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
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

----- 발급 및 사용 관리 -----
-----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
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
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
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
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
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
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

<신 설>

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정보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정보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
황 정보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6. 제14조제5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

----- 별표 1의2-----
-----.

② ~ ④ (생 략)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6조의2(지도·감독)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

----- 별표 1의3-----

--.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의3과 -----
---.

제76조의2(지도·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학습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u><신 설></u> <u><신 설></u> 1. 2. (생략) ③ (생략) <u><신 설></u>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u>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u>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 ----- -----. 1. <u>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u> 2. <u>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 3.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 8. (생략)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연 락 처	(044) 203 - 6381 (044) 203 - 6778